「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의 견 서

(이새날 의원)

정원도시국장 이수연입니다.

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,

정원도시국 소관 사안으로

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15호 「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안은

보행자전용길로 지정된 서울로 7017에서 자동차, 자전거,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통행을 제한하고

거리가게에서의 상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

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국 검토의견은 '원안동의'입니다.

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